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 개정·시행('17.5.30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우리 구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 과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 13조제2항)
- 「평생교육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이동된 조문정비 (안 제14조)
(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2 →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- 이 개정 조례안은 '17.5.30.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 개정·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13조제2항에서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,
 - 「평생교육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안 제14조 중 법 제21조의2에서 법 제21조의3으로 법령 이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
 - 그 밖에 연임 표현을 간소화하여 정비하였음.(안 제8조)
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,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수정안의 요지 : 수정안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위촉직 위원이 무제한으로 연임될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위원이 연임될 우려가 있음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8조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10. 23.
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위촉직 위원이 무제한으로 연임될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
위원이 연임될 우려가 있음.

2. 수정내용

- 안 제8조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“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2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 중 “법 제21조의2”를 “법 제21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영등포구의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,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우리 구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과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 13조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7. ~ 9.2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2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 중 “법 제21조의2”를 “법 제21조의3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임기) ----- ----- 한다.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</u></p> <p>2. <u>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</u></p> <p>3. <u>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</u></p> <p>4. <u>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</u></p> <p>5. <u>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</u></p> <p>6. <u>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</u></p> <p>7. <u>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</u></p> <p>8. <u>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</u></p> <p>9. <u>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</u></p>	<p>제13조(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법 제21조제3항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및 관리

10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

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4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·운영)
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〈삭 제〉

제14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·운영)
----- 법 제21조의3-----

-----.